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55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김○○
피 고 ○○광역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40,196,500원(가산세 11,973,5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3,445,700원(가산세 623,4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 주식회사(이하 'D(주)')는 2001. 2. 27. 건축공사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원고 A은 D(주)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B은 그 배우자, 원고 C은 그 자녀이다.

나. 원고들과 원고 A의 처남 E은 D(주)의 과점주주 집단(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 중 '신탁계약 전(2018. 12. 31.)' 란 기재와 같이 D(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77.2%를 소유하고 있었다.

주주명단	생년월일	특수관계 (과점주주)	신탁계약 전 (2018.12.31.)		신탁계약 이후 (2019.11.14.)	
			보유주식수	비율(%)	보유주식수	비율(%)
A	F	본인(과점주주)	70,000	46.67	70,000	46.67
B	G	배우자(과점주주)	8,000	5.33	8,000	5.33
C	H	자(과점주주)	16,000	10.67	69,200	46.13
E	I	처남(과점주주)	21,800	14.53	-	-
J	K	기타	10,800	7.20	-	-
L	M	기타	10,800	7.20	-	-
N	O	기타	4,900	3.27	-	-
P	Q	기타	4,900	3.27	-	-
R	S	기타	2,800	1.87	2,800	1.87
과점주주 합계			115,800	77.20	147,200	98.13

다. E, J, L, N, P(이하 'E 등')는 2019. 11. 14. 그들 소유의 D(주)의 발행주식 53,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원고 C에게 신탁하면서 위탁자들 생전 및 사후의 수익자를 D(주)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주식 변동 내역은 이 사건 표 중 '신탁 계약 이후(2019. 11. 14.)' 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22. 5. 3.부터 같은 달 20.까지 D(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점주주 집단 소유 주식등의 비율이 77.2%에서 98.13%로 20.93%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5. 23. D(주)에게 지방세 세무조사(과점주주) 결과 통지를 하고, 2022. 7. 11. D(주)의 부동산 등에 증가한 과점주주 주식 보유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1,411,146,738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이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E 등은 D(주)의 설립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원고 A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전후로 과점주주 집단(원고들)의 주식 소유비율은 98.13%로 동일하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D(주)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조의3¹⁾, 법인세법 제5조²⁾에 따라 이 사

1)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2. 29]

2) 제5조(신탁소득)

- 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2020.12.22>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신설 2020.12.22, 2023.12.31>



건 주식은 위탁자들인 E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전후로 과점주주 집단(원고들과 E)의 주식 소유비율은 77.2%로 동일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 그 주식의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8058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



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원고 A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 을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갑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는 원고 A이라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주) 설립과 증자 당시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³⁾. 원고 A과 E 등과 사이에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된 흔적이 없다.

② E, N, P는 D(주)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D(주)의 대외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처분한 신탁재산에 관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운용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로서(신탁법 제2조), 위탁자의 처분 권한을 전제로 하는데, E 등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 C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E 등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5. 5. 16.에 이르러 입증취지의 기재 없이 서증(2009년 및 2015년 D(주) 금융거래내역의 일부로 보인다)제출을 하였을 뿐이나, 이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거나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J, L이 D(주)의 2009. 4.경 증자 무렵 D(주)의 계좌에 각 1억 원을 실제 입금하였는바(갑 6호증), 원고들이 갑 6호증을 제출하는 취지를 위 각 1억 원 상당 주금의 가장납입 주장이라고 설회하더라도, 원고 A이 J, L에게 위 돈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 중이던 2024. 1.경, 인천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식 중 24,400주를 2009. 4. 2. 및 2015. 4. 1. E 등(E(1,800주), J(10,800주), L(10,800주), N(500주), P(500주))의 명의로 각각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2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적이 있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4. 2. 24. 원고 A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근거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4호증)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E 등이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납부⁴⁾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오히려 원고들은 '원고 A이 증여세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된다면 원고들은 이중과세를 당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할 뿐이다), 원고 A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식 수와 이 사건 주식 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은 위탁자들인 E 등에게 귀속되고 원고 C이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아 이 사건 신탁계약 전후로 과점주주 주식 소유비율이 동일하다는

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登記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登記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登記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제2조의3, 법인세법 제5조는 2020. 12.경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이는 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일 뿐, 위탁자인 E 등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인 점, ② E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⁵⁾한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E 등은 일방적으로 신탁을 변경, 철회 또는 해지할 수 없고(제2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식의 관리는 원고 C의 판단에 따르기로(제25조 제1항)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D(주)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에서 하는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④ 법 제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그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12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김○○

판사 장○○